

환경부 공고 제2012-21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2년 4월 19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오염 예측·발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기오염 예측·발표(안 제8조)

대기오염도 예측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예측하여 보도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안 제47조, 제3항, 제4항 신설)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허용기준·시험방법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 수행자·대행자에게 수행토록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운행이륜차 정기검사 연장·유예, 검사대행 등(안 제62조, 제62조의2 신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예정됨)에 따라, 검사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검사명령 미이행 시 번호판 영지 등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대행 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함

4. 불법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회수(안 제75조)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 외에 추가로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령 제452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2년 4월 27일



1. 개정이유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및 석면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0613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4호, 2012. 4. 27 공포, 4.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과 자연발생석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절차(안 제8조)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자는 석면조사 · 분석 결과 보고서 및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안 제15조)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보존(안 제23조)

석면건축자재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시까지 보존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공개 등(안 제37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장 주변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환경부 공고 제2012-249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규정」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2년 4월 30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 가. 사전에 분석검토 없이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유해물질 함량이 퇴비 및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규정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전에 분석검토 없이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 확대

사전에 부숙검토 없이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물학적처리(혐기성 소화)를 거친 경우를 포함하고자 함
- 나.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삭제 및 관련규정 정비(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 9. 27) 시 동 고시에 규정된 매립시설 복토제로 사용되는 고화물의 품질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2 제13호가목)에 규정하였기에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